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(이달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9657

발의연월일 : 2026. 7. 1.

발 의 자 : 이달희・안철수・김예지
김은혜・김기웅・서범수
최보윤・유용원・강선영
서천호・고동진・김상훈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(이하 “피해아동”이라 한다)는 형사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고,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피해아동에게 법적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.

그런데 현행법상 국선변호사의 업무 범위가 ‘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’로 제한되어 있어, 피해아동 또는 가해자가 해당 사건의 확정된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사는 헌법재판절차에서 국선대리인으로서 피해아동을 조력할 수 없음.

이에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해당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검사는 피해아동이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

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정하여 피해아동을 조력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제7항 및 제8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검사는 피해아동이 확정된 재판에 대하여 「헌법재판소법」 제68조제3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.

⑧ 제7항은 가해자가 자기가 피고인이었던 재판에 대하여 「헌법재판소법」 제68조제3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확정된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) ① ~ ⑥ (생략)	제16조(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⑦ 검사는 피해아동이 확정된 재판에 대하여 「헌법재판소법」 제68조제3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.
<신 설>	⑧ 제7항은 가해자가 자기가 피고인이었던 재판에 대하여 「헌법재판소법」 제68조제3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.